

## 제 6 장 표준 관련 조치

### 제 6.1 조 적용범위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관련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입규격, 그리고
  -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 6.2 조 의무의 범위

1. 제 1.4 조(의무의 범위)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중앙정부에만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장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sup>1</sup> 및 지방정부 그리고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 제 6.3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그 밖의 국제 협정의 확인

제 1.2 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 가.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

<sup>1</sup> 이 장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밖의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상호 확인한다.

-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2 조부터 제 9 조까지 그리고 부속서 1 과 3 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제 6.4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관련 조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2. 양 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회원국인 그 밖의 지역 및 다자 협정 또는 약정에서의 각 당사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무역촉진 양자 이니셔티브를 상호 확인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에 있어 협력한다.
  - 가. 지역 및 국제 표준화 기구 내 회원 자격을 통해서와 같이, 각 당사국의 표준화 기관이 적절한 경우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
  - 나. 정부 이외의 양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 기구가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적합성평가 기구와의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
  - 다. 관련 국제 표준과 지침을 기초로 적합성 평가 기관의 인정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 라. 그 각각의 인정제도 또는 기관 간 관련 다자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인정된 적합성 평가 기관의 결과의 수용을 증진하는 것

4.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자국 영역 내에서의 인정 촉진을 위한 협정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라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5. 이 협정에 통합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맥락에서, 정보 교환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6.5 조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지역 및 지방정부가 이 조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서 협력한다.

가. 의료 장비 분야에서 표준 관련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것

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및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중복일 수 있는 시험과 인증 요건을 축소하는 것

다.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APEC 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 2 단계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한국은 제 2 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 라. 저압 장비 분야에 있어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에서 개발된 표준과 같은 국제 표준의 부합화 및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 각 당사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체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중복된 시험 및 인증요건을 축소하기 위하여 국가 인증기관이 관련 전기 안전요건 국가인증을 위한 기초로서 서로의 국제전기기기 인증시험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장려하는 것
- 마. 국제 시험소 인정 협력체(ILAC)와 아시아 태평양 시험소 인정협력체(AP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에 따라, 한국 인정기구(KOLAS)와 캐나다 표준위원회(SCC)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 수용을 촉진하는 것
- 바.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연구 결과 및 시험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국 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국립연구기구건설연구원(NRC-IRC),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간에 협력을 장려하는 것. 신뢰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과 캐나다 국립연구기구건설연구원이 협력 약정에 관해 협상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제품 분야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의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기술 임시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 제 6.6 조 투명성

1. 한쪽 당사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제안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동시에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제안한 기술 규정에 대한 규제적 영향 분석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다만, 그 분석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에 관한 투명성 절차에서, 여전히 개정이 추가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 단계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제 3 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5.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중과 다른 쪽 당사국을 위하여 최소 60 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6. 제 1 항, 제 2 항 및 제 5 항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제안된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 규정에 대한 자국의 영향 분석서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제안된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의견을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제 10 조에 따라 수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문의처에 전송할 수 있다.

7.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자국의 답변 또는 답변의 요약, 자국이 최종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한 날보다 늦지 않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 **제 6.7 조** **자동차 표준 관련 조치**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시장에 허용한다.

## 안전기준의 반영 또는 동등성

2. 한국은 다음을 준수하는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상응하는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KMVSS"<sup>2</sup>라 한다) 및 이의 개정본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가. 부속서 6-가에 기재된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이하 "FMVSS"라 한다)과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또는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그 개정본의 조건에 따라 그 협정 부록 2-다-3 표 1 에 기재된 UN 규정<sup>3</sup>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sup>4</sup>

한국이 어떠한 추가적인 FMVSS, UN 규정, 또는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반영하거나 또는 그러한 어떠한 추가적인 표준 또는 규정을 KMVSS 와 동등한 것으로 달리 수용하는 경우, 한국은 또한 어떠한 수정을 포함하여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 법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대로 이러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캐나다의 자동차 상품을 상응하는 KMVSS 를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3. 캐나다는 다음을 준수하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 상품을 상응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기준(이하 "CMVSS"<sup>5</sup>라 한다) 및 이의 개정본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

<sup>2</sup>KMVSS 는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에 상응하는 표준을 말한다.

<sup>3</sup>이 조의 목적상, UN 규정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틀 내에서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의 1958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을 말한다.

<sup>4</su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제 2 항나호와 합치되게 UN 규정의 준수를 수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UN ECE 형식승인서는 적합성의 추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형식승인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이 승인된 형식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한국은 캐나다에 알린다. 이 각주는 제 4 항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한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sup>5</sup> CMVSS 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V.1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안전규정의 상응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을 말한다.

- 가. CMVSS 에 규정된 모든 적용을 포함하여 상응하는 CMVSS 에 반영된 대로 부속서 6-나(표 1)에 기재된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또는
- 나. CMVSS 에 규정된 모든 적용을 포함하여 상응하는 CMVSS 에 반영된 대로 부속서 6-나(표 2)에 기재된 UN 규정

캐나다가 어떠한 추가적인 FMVSS, UN 규정, 또는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반영하거나 또는 그러한 어떠한 추가적인 표준 또는 규정을 CMVSS 와 동등한 것으로 달리 수용하는 경우, 캐나다는 또한 어떠한 수정을 포함하여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 법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대로 이러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한국의 자동차 상품을 상응하는 CMVSS 를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4. 제 2 항 및 제 3 항에 언급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 가. 자동차 상품이 자국의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되고 표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제작사가 자기 인증한 자동차 상품을 포함하여, 자동차 상품이 적절한 경우 다음을 준수하는지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
  - 1)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 또는
  - 2)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규정된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

각 당사국은 해당 상품이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에 따라 그 자동차 상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다.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급자에 대해 자동차 상품을 자

국의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일시적 긴급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일시적 긴급조치는 시행되기 전에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과 공급자에게 통보된다. 그리고

라. 표준이 자국 국내법에 반영되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표준이나 방식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수정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수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안전 수준보다 더 낮은 안전 수준을 규정하거나 캐나다의 경우, 북아메리카 통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 제 2 항 및 제 3 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 또는 규정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에의 반영을 유지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준이나 규정을 자국의 국내법과 동등하다고 지속적으로 달리 수용한다.

5. 당사국이 제4항라호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을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수정을 통보한다. 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그러한 수정으로 인해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표준 및 규정을 자국 국내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의 동등성을 달리 수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고려 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이에 따라 수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적합조사

6.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의하여 제작사 또는 수입자가 관련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적합조사에 관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의 근거 및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제작사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7. 양 당사국은 관련 세계기술규정, 또는 국제표준화기관이 발표한 그 밖의 지침이나 권고사항(이하 통칭하여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라 한다), 또는 존재하는 경우 그 관련 부분을, 그러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 5.4 조의 적용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당사국



에 부적절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유가 적절히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상품에 대한 적합조사 절차의 근거로 사용하기로 합의한다<sup>6</sup>. 당사국이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근거하지 아니한 적합조사 절차를 적용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신기술

8. 한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상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자국에서의 그 상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 된다.

9. 한쪽 당사국이 자동차 상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상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자국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그 제품의 수입자에게 자국의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그 통보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 협력

10.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ECE) 또는 그 승계기관의 틀 내에서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상품 사안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 6.8 조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

---

<sup>6</sup> 이 항의 “관련” 지침 또는 권고사항은 당사국이 해당 표준 또는 규정을 인용하거나 복제함으로써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한 표준 또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조사 절차와 관련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다.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6-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역 및 관련 규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 및 촉진하는 것

나. 표준 관련 조치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다. 표준 관련 조치와 우수규제관행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라. 당사국의 모든 합리적인 정보 요청에 응하여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마. 표준 관련 조치에 관한 비정부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사. 이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고려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이 장의 조항 이행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대로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차.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 회 회합한다.

### 제 6.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자동차 상품**이란 다음의 제품을 제외하고 HS 제 40 류,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및 제 94 류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을 말한다.

가. 트랙터 (HS 제 8701.10 호, 제 8701.20 호, 제 8709.11 호, 제 8709.19 호 및 제 8709.90 호에 포함)

나. 설상차와 골프카트(HS 제 8703.10 호에 포함), 그리고

다. 건설기계 (HS 제 8413.40 호, 제 8425.11 호, 제 8425.19 호, 제 8425.31 호, 제 8425.39 호, 제 8425.41 호, 제 8425.42 호, 제 8425.49 호, 제 8426.11 호, 제 8426.12 호, 제 8426.19 호, 제 8426.20 호, 제 8426.30 호, 제 8426.41 호, 제 8426.49 호, 제 8426.91 호, 제 8426.99 호, 제 8427.20 호, 제 8428.10 호, 제 8428.20 호, 제 8428.31 호, 제 8428.32 호, 제 8428.33 호, 제 8428.39 호, 제 8428.40 호, 제 8428.60 호, 제 8428.90 호, 제 8429.11 호, 제 8429.19 호, 제 8429.20 호, 제 8429.30 호, 제 8429.40 호, 제 8429.51 호, 제 8429.52 호, 제 8429.59 호, 제 8430.10 호, 제 8430.20 호, 제 8430.31 호, 제 8430.39 호, 제 8430.41 호, 제 8430.49 호, 제 8430.50 호, 제 8430.61 호, 제 8430.69 호, 제 8431.10 호, 제 8431.31 호, 제 8431.39 호, 제 8431.41 호, 제 8431.42 호, 제 8431.43 호, 제 8431.49 호, 제 8474.10 호, 제 8474.20 호, 제 8474.31 호, 제 8474.32 호, 제 8474.39 호, 제 8474.80 호, 제 8474.90 호, 제 8479.10 호, 제 8701.30 호, 제 8704.10 호, 제 8705.10 호, 제 8705.20 호, 제 8705.40 호 및 제 8705.90 호에 포함)

우수규제관행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 수행을 위한 지침 원칙」(2005)에 정의된 우수규제관행을 말한다. 그리고

표준 관련 조치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정의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말한다.

## 부속서 6-가

### 제 6.7 조제 2 항가호에 언급된 목록<sup>7</sup>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충돌시 승객 보호	정면	FMVSS 208	KMVSS 제 102 조제 1 항, 제 3 항
	측면	FMVSS 214	KMVSS 제 102 조제 1 항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 동		FMVSS 204	KMVSS 제 89 조제 1 항제 2 호
충돌시 연료노출 방지		FMVSS 301	KMVSS 제 91 조제 1 항
충돌시 앞면유리 고정성		FMVSS 212	KMVSS 제 105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
충돌시 앞면유리 침입성		FMVSS 219	KMVSS 제 105 조제 2 항제 3 호
좌석 및 그 잠금장치		FMVSS 207	KMVSS 제 97 조
머리지지대		FMVSS 202a	KMVSS 제 26 조, 제 99 조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FMVSS 206	KMVSS 제 104 조제 2 항
실내충격시 승객보호 (계 기판넬, 좌석등받이, 팔걸 이, 햇빛가리개)		FMVSS 201	KMVSS 제 88 조, 제 98 조, 제 100 조, 제 101 조
범퍼 충격흡수		49 CFR Part 581	KMVSS 제 93 조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FMVSS 111	KMVSS 제 108 조
조향장치 충격흡수		FMVSS 203	KMVSS 제 89 조제 1 항제 1 호
옆문 강도		FMVSS 214	KMVSS 제 104 조제 1 항
천정 강도		FMVSS 216a	KMVSS 제 92 조

<sup>7</sup> 양 당사국은 이 표에 기재된 일부 대상의 경우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이 부품의 장착을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나, 그 부품이 선택적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6.7 조제 4 항다호 또는 라호에 수립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부품의 장착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FMVSS 210	KMVSS 제 27 조제 1 항, 제 2 항, 제 103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등화장치	설치기준	FMVSS 108	KMVSS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47 조
	전조등	FMVSS 108 <sup>8</sup>	KMVSS 제 38 조, 제 48 조제 3 항, 제 106 조제 1 호
	안개등 <sup>9, 10</sup>	SAE J583 (2005 년 9 월판) 및 SAE J1319 (2005 년 5 월판), 또는 그러한 표준에 대한 개정본	KMVSS 제 38 조의 2, 제 106 조제 2 호
	후퇴등	FMVSS 108	KMVSS 제 39 조, 제 106 조제 3 호
	차폭등	FMVSS 108	KMVSS 제 40 조, 제 106 조제 4 호
	번호등	FMVSS 108	KMVSS 제 41 조, 제 106 조제 5 호
	후미등	FMVSS 108	KMVSS 제 42 조, 제 106 조제 6 호

<sup>8</sup> 가스방전식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그 자동차가 전조등의 수직광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sup>9</sup> 안개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적용 가능한 SAE 표준을 준수하는 그러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sup>10</sup> 가스방전식 전면안개등 또는 발광다이오드 전면안개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 동등성은 그 자동차가 전면안개등의 수직광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KMVSS
	제동등	FMVSS 108	KMVSS 제 43 조제 1 항, 제 106 조제 7 호
	보조제동등	FMVSS 108	KMVSS 제 43 조제 2 항, 제 3 항, 제 106 조제 8 호
	방향지시등	FMVSS 108 <sup>11</sup>	KMVSS 제 44 조, 제 106 조제 9 호
	보조방향지시등	FMVSS 108	KMVSS 제 44 조, 제 106 조제 10 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FMVSS 108	KMVSS 제 48 조제 4 항, 제 106 조제 11 호
운전자의 시계범위		FMVSS 111	KMVSS 제 50 조제 1 항, 제 2 항, 제 94 조제 1 항
원동기 출력		ISO 1585 <sup>12</sup>	KMVSS 제 111 조
시계 확보 장치	창뒤편이거	FMVSS 104	KMVSS 제 51 조제 2 항, 제 109 조제 1 호
	서리제거장치	FMVSS 103	KMVSS 제 109 조제 2 호
	안개제거장치	FMVSS 103	KMVSS 제 109 조제 3 호
	세정액분사장치	FMVSS 104	KMVSS 제 109 조제 4 호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FMVSS 124	KMVSS 제 87 조
연료 소비율		40 CFR Part 600	KMVSS 제 111 조의 4 제 1 항, 제 2 항제 1 호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FMVSS 135	KMVSS 제 15 조제 1 항, 제 3 항, 제 8 항, 제 90 조제 1 호
타이어 파열		FMVSS 110	KMVSS 제 88 조의 2
차실내장재 연소성		FMVSS 302	KMVSS 제 95 조
내부격실문 열림방지		FMVSS 201	KMVSS 제 111 조의 3

<sup>11</sup> 이 동등성은 황색 또는 호박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sup>12</sup> 이 동등성은 내연기관(구동전동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에만 적용된다.

**부속서 6-나**  
**표 1**

제 6.7 조제 3 항가호에 언급된 목록<sup>13, 14</sup>

대상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	상응하는 CMVSS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FMVSS 101	CMVSS 101
앞면유리 서리제거 및 안개 제거	FMVSS 103	CMVSS 103
앞면유리 창담이기 및 세정	FMVSS 104	CMVSS 104
유압 및 전기식 제동장치	FMVSS 105	CMVSS 105
브레이크호스	FMVSS 106	CMVSS 106
등화장치 및 반사기	FMVSS 108	CMVSS 108
승용자동차의 타이어	FMVSS 109	CMVSS 109
타이어선택 및 림	FMVSS 110	CMVSS 110
후드결쇠장치	FMVSS 113	CMVSS 113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	FMVSS 114	CMVSS 114
자동차식별번호	49CFR565	CMVSS 115
자동차 브레이크액	FMVSS 116	CMVSS 116
동력구동 창문, 칸막이 및 지붕판넬장치	FMVSS 118	CMVSS 118
승용차 타이어를 제외한 특정 타이어	FMVSS 119	CMVSS 119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	FMVSS 120	CMVSS 120

<sup>13</sup> 양 당사국은 이 표에 기재된 일부 대상의 경우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규정이 부품의 장착을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나, 그 부품이 선택적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6.7 조제 4 항다호 또는 라호에 수립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부품의 장착을 요구할 수 있다.

<sup>14</sup> 양 당사국은 CMVSS 를 구성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자동차 타이어 안전규정의 상응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이들의 개정본에 이 부속서의 FMVSS 및 그 밖의 표준 또는 규정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반영되었음을 인정한다.



차용 타이어선택 및 립		
공기식 제동장치	FMVSS 121	CMVSS 121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FMVSS 122	CMVSS 122
이륜자동차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FMVSS 123	CMVSS 123
가속제어장치	FMVSS 124	CMVSS 12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FMVSS 126	CMVSS 126
통학버스의 보행자안전장치	FMVSS 131	CMVSS 131
경량자동차의 제동장치	FMVSS 135	CMVSS 135
경량자동차용 신규레이디얼 플라이타이어	FMVSS 139	CMVSS 139
승객보호	FMVSS 201	CMVSS 201
머리지지대	FMVSS 202	CMVSS 202
운전자 충격보호	FMVSS 203	CMVSS 203
조향컬럼 후방이동	FMVSS 204	CMVSS 204
창유리	FMVSS 205	CMVSS 205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FMVSS 206	CMVSS 206
좌석부착장치	FMVSS 207	CMVSS 207
정면충돌 승객보호	FMVSS 208	CMVSS 208
좌석안전띠 어셈블리	FMVSS 209	CMVSS 209
앞면유리 고정성	FMVSS 212	CMVSS 212
범퍼 (승용자동차)	49 CFR 581	CMVSS 215
천정 강도	FMVSS 216	CMVSS 216
앞면유리 침입성	FMVSS 219	CMVSS 219
전복 보호	FMVSS 220	CMVSS 220
연료장치 보존성	FMVSS 301	CMVSS 301
내장재 연소성	FMVSS 302	CMVSS 302
전해질 누출 및 감전보호	FMVSS 305	CMVSS 305
실내트렁크해제	FMVSS 401	CMVSS 401
저속자동차	FMVSS 500	CMVSS 500

표 2

제 6.7 조제 3 항나호에 언급된 목록<sup>15</sup>

대상	UN 규정	상응하는 CMVSS
전조등	UN-R 98	CMVSS 108
전조등	UN-R 112	CMVSS 108
전조등	UN-R 113	CMVSS 108
승용자동차의 소음	UN-R 51	CMVSS 1106
이륜자동차의 소음	UN-R 41	CMVSS 1106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UN-R 11	CMVSS 206
이모빌라이저	UN-R 116 (이모빌라이저에 한함)	CMVSS 114
전후방보호장치(범퍼)	UN-R 42	CMVSS 215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UN-R 78	CMVSS 122
전조등	UN-R 8	CMVSS 108
전조등	UN-R 20	CMVSS 108
전조등	UN-R 31	CMVSS 108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UN-R 57	CMVSS 108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UN-R 72	CMVSS 108

<sup>15</sup> 양 당사국은 CMVSS 를 구성하는 캐나다 자동차 안전규정 부록 IV 및 V.1 의 상응하는 번호가 부여된 조항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이들의 개정본에 이 부속서의 UN 규정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반영되었음을 인정한다.

## 부속서 6-다

###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하여 조율된다.

-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외교통상개발부 또는 그 승계기관